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09. 07(화) 평창군수(기획감사실장)
- 나. 회부일자 : 2004. 12. 21(화)
- 다. 상정일자 : 2004. 12. 23(목)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 12.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가. 제안이유

- 유사목적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로 통폐합, 각 기금 계정별로 운영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 운영성과가 미흡한 저소득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를 폐지 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금 운용의 합리화도모

-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4조)
 -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
 - 각각 별도 계좌로 설치관리
-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 수립(안 제6조)
-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관(환경복지과장)을 두고 각 계정별 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둠(안 제7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해 평창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설립
(안 제9조 내지 14조)
 - 공무원 및 민간인등 15명
-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여받은 자금이 2천만원 이하며, 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 기간 중에 한하고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이자율의 15% 범위 내에서 한다.
(안 제17조)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2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사업자금은 1천만원 한도며, 대여금 상환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연 2%, 연체이자율은 연5%의 이자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이자를 무이자로 한다(안 제19조)
-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조례,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평창군노인복지 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함(안 부칙제2조)
-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회수하되 기금 및 회수액 수입은 기초생활보장계정의 기금으로 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각 계정의 기금으로 한다(안 부칙제3조)
- 기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대여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용자건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안 부칙제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태영)

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5조 및 제45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개별법령에 의거 설치되어 운영되어오던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평창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평창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 평창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등 유사 조례의 통폐합과 함께 운영성과가 미흡한 평창군저소득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기초생활 보장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려는 조례로써 사회복지 분야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합리적 관리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있어 폐지되는 각각의 조례에 의해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계정을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로 설치 관리 함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 5개의 조례가 1개의 조례로 통폐합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막대한 기금예산의 관리 운용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동안 각종의 안심사를 통하여 평창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실질적인 활동을 위한 통폐합 운영등을 주문한 만큼 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등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 기금의 지원부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대여 및 상환은 점차 어려워지는 국내경기와 더욱 힘들어지는 기초생활보장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여금의 상환기간과 이율을 2년거치 2년균분 연5%에서 3년거치 3년균분 연2%로 하향조정하였고,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못할 경우의 연체이자도 연8%에서 연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타계정의 경우 기존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마지막으로 부칙부문입니다.

- 5개의 조례가 폐지되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폐지되는 조례에 따른 각각의 규칙과 기금심의위원회 폐지 및 신설되는 조례의 규칙 제정과 운영을 담당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조속히 이루어져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O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사회복지기금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12월 23일

제 안 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사유

- 5개의 기금이 통합되어 운용되는 사회복지기금의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기로 함.

2. 주요골자

- 안 제11조의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 의원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의 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제2호를 제3호로, 제1호를 제2호로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 의원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2. 기초생활보장·장애인·노인·여성복지분야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 자</p> <p>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p>	<p>제11조(구성) ①~② (생략)</p> <p>③ -----</p> <p>1. 군의회 의원</p> <p>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3. 기초생활보장·장애인·노인·여성복지분야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 자</p> <p>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p>